시행일:2019.03.28. 입력자:강다겸 확인자:원대희

이길여 암・당뇨연구원 운영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17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이길여 암・당뇨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9.3.28.)

제2조(명칭) 본 연구원은 가천대학교 이길여 암・당뇨연구원 (이하 “본 연구원”이라 한다)이라 부른다.

제3조(연구원의 목적) 본 연구원은 암, 당뇨병 및 각종 주요 질환의 원인・진단・치료・예방을 위한 연구, 그리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과 인류의 생명과학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9.03.28.)

제4조(연구원의 사업) 본 연구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(개정 2019.03.28.)

1. 암, 당뇨병 및 각종 주요 질환의 기초 및 임상연구(개정 2019.03.28.)
2. 의과대학 기초 의학 교육 및 의생명과학 대학원 교육지원(개정 2019.03.28.)
3.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(개정 2019.03.28.)
4.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연구(개정 2019.03.28.)
5. 학술 세미나,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(개정 2019.03.28.)
6.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(개정 2019.03.28.)

제 2 장 조 직

제5조(구성) 본 연구원에는 원장, 부원장, 참여교수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, 행정실장을 둔다. 또한 필요시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9.03.28.)

제6조(원장) ①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를 관장한다.(개정 2019.03.28.)

③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,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유사시 원장을 대신한다.(개정 2019.03.28.)

④원장과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9.03.28.)

⑤(삭제 2019.03.28.)

제7조(참여교수) 참여교수는 본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9.03.28.)

제8조(행정실장) 행정실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본 연구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19.03.28.)

제9조(연구교수 및 연구원)(개정 2019.03.28.)

①연구교수는 전문적인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9.03.28.)

②연구원은 각 참여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9.03.28.)

③(삭제 2019.03.28.)

④(삭제 2019.03.28.)

제 3 장 연구원 교원 · 연구원 및 직원

제10조(직원 및 조교) 본 연구원에는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에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9.03.28.)

제11조(운영위원회) (개정 2019.03.28.)

①운영위원회는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9.03.28.)

②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회무를 통할한다.

③운영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(신설 2019.03.28.)

④운영위원회는 기획부, 학술부, 연구부, 교육부, 시설부, 홍보부를 두며 각 부는 운영위원 중 부장 및 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하며 각 부별 소관 업무에 대

해서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(개정 2019.03.28.)

⑤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(개정 2019.03.28.)

제12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(개정 2019.03.28.)

①운영위원회 회칙 제정 및 관리, 공간 배정, 교수 발굴 및 영입, 외부기관과의 협력,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03.28.)

②세미나 주관 및 연가 초청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03.28.)

③연구비 안내, 대형 연구 팀 구성 및 지원, 논문 발표 실적 관리 및 연구 윤리 등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03.28.)

④연구실 안전 교육, 방사선 안전교육, 동물 실험 관련 교육, 연구윤리 교육 및 교육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03.28.)

⑤연구 시설·장비 관리, 사용자 교육 및 사용료 관리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03.28.)

⑥홈페이지 관리, 홍보 및 홍보 자료 제작,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03.28.)

⑦기타 본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(개정 2019.03.28.)

제 4 장 연구원 자문단

제13조(자문위원회)(개정 2019.03.28.) 원장은 본 연구원의 연구 방향을 자문할 자문단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할 수 있으며, 5명 이내의 학내 및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.

제14조(자문위원회 회의) 원장은 연 1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본 연구원의 연구방향에 관한 자문과 평가를 받을 수 있다.(개정 2019.03.28.)

제 5 장 교 육

제15조(연구수행을 위한교육) 본 연구원의 모든 교원과 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관련 법령에 의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03.28.)

①연구실 안전교육(개정 2019.03.28.)

②방사선 안전교육(개정 2019.03.28.)
③동물실험 관련 교육(개정 2019.03.28.)
④연구윤리 교육(개정 2019.03.28.)
⑤소방 안전교육(개정 2019.03.28.)
⑥성희롱 예방 교육(개정 2019.03.28.)
⑦기타 연구 활동에 필요한 교육(신설 2019.03.28.)

제 6 장 연구비 및 간접경비 등

제16조(연구비 및 간접경비) 한국연구재단을 포함한 국가기관, 이에 준하는 국내외 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혜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라 연구 간접 경비를 납부한다.(개정 2019.03.28.)

제17조(기부금 및 위탁 연구기금) 본 연구원 교원이 외부로부터 기부금이나 위탁연구 기금을 받을 경우, 해당 교원의 연구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03.28.)

제18조(핵심 장비 사용료)
①연구자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핵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책정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한다.(개정 2019.03.28.)
②사용료 지불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(신설 2019.03.28.)

제 7 장 실험실 사용기준

제19조(실험실 사용 기준) ①각 참여교수에게는 임용시점에서 실험실 및 실험대를 제공하며, 연구비 수혜액에 따라 실험대의 수를 증감시킬 수 있다. 실험대의 증가가 필요할 경우 참여교수는 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, 그 증가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.(개정 2019.03.28.)
②공용 실험 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19.03.28.)
③창고(Storage Room)의 경우 지정된 장소이외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간이동을 할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④참여교수 이외 교원 및 외부 기관이 본 연구원의 공간 사용을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(개정 2019.03.28.)
⑤전항에 의해 공간을 사용할 경우 본 연구원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

일정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19.03.28.)

제 8 장 상 벌

제20조(상벌) ①본 연구원은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를 표창할 수 있다. ②연구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본 연구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.

제 9 장 연구교원의 원외활동

제21조(참여교수의 외부(원외)활동) 참여교수의 외부활동은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19.03.28.)

제 10 장 재 정

제22조(재정)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.(개정 2019.03.28.)

1. 교비 및 산학협력단 보조금(신설 2019.03.28.)
2. 기금 및 연구사업 수익금(신설 2019.03.28.)
3.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지원금(신설 2019.03.28.)
4. 기타 수입(신설 2019.03.28.)

제23조(회계 연도)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4조(예산 및 결산) 원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3개월 전에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운영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5조(감사) 본 연구원의 수입·지출에 대한 감사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6조(보고) 원장은 연구비 수혜 및 연구 활동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03.28.)

제 11 장 부속기관

제27조(부속기관) 본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두며, 각 기관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1. 실험동물센터
2. 마우스대사기능형질연구소
3. (삭제 2019.03.28.)
4. 당뇨대사질환연구소
5. 세포 및 유전자은행
6. 줄기세포연구소

제 12 장 기타 위원회

제28조(기타 위원회) 본 연구원의 부속기관 운영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,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(개정 2019.03.28.)

제 13 장 규정개정 및 준용

제29조(규정개정 등) 본 연구원의 규정개정, 해산 및 기타 중요사항은 대학의 규정개정 절차를 준 용한다.

제30조(운영지침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1조(준용)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천대학교 부속기관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